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59
----------	------------

제안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무적 위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청소년 문화예술인’,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창의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위원회 구성 방법 중 일부 피추천자에 대한 의무적 위촉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 을 “문화예술활동” 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
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청소년 문화예술인” 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
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 를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대중문화예술산업” 을 “문화예술 분야”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를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6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를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로 한다.

안 제8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u>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 문화 예술 연습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대중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청소년 문화 예술인</u>----- ----- <u>문화예술활동</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이란 <u>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3.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중도 포기자</u>”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중 연습생 계약종료</u></p>	<p>제2조(정의) ----- -----.</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청소년 문화예술인</u>”이란 <u>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3. “<u>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u>”이란 <u>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u></p>

및 계약해지가 된 사람을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5.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3조(책무) ① -----
----- 청소년 문화

예술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폭언 · 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 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예술인-----
-----.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인-----

-----.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 청소년 문화예술인-----

-----.

1. ----- 청소년 문화예술인-----

2. -----
청소년 문화예술인-----

3. -----
-----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

4. -----
--- 청소년 문화예술인-----

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7. 청소년 문화예술인-----

8. ----- 청소년 문화예술인-----

② -----청소년 문화예술인-----

-- 청소년 문화예술인-----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1.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생략)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 청소년 문화예술인-----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문화예술인-----

3. 문화예술 분야 -----

4. (제정안과 같음)

5. ----- 청소년 문화
예술인-----

하는 사람

④ (생략)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2.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4.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정안과 같음)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

1.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2.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3.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4.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5. -----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② (생 략)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 시장은 청소년 문화 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청소년 문화 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운영의 위탁) -----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제9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

-----청소년 문화예술인-----
-----.

제10조(협력) ----- 청소년 문화 예술인-----

-----.

제11조(표창) ----- 청소년 문화 예술인-----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폭언·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 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지원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 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개인별 · 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2.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4.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